

2018. 1.18.(목) ~
1.25.(목) / 8일간

제29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



장 성 군 의 회

목 차

1. 장성군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3
2.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

심 사 결 과

의 안 명	심사결과
○ 장성군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	원안가결
○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
주요 내용

1. 장성군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

▪ 제출일자 : 2018. 1. 12.

▪ 제 출 자 : 장성군수

▪ 제안이유

- 「스포츠산업진흥법」 전부개정(2016. 2. 3.) 및 시행(2016. 8. 4.)에 따라 스포츠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, 스포츠를 통한 군민의 여가 선용 기회의 확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함.

▪ 주요내용

-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 - “프로스포츠단” 및 “연고 경기장”
-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4조)
-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을 규정함(안 제5조)
- 공유재산 사용료 및 분할납부를 규정함(안 제7조)
 - 연간사용료가 1백만원 초과시 4회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가능
-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및 감경을 규정함(안 제8조)
 -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
 - 프로스포츠단이 총 건설비용 4분의 1이상 투자한 체육시설 사용시 등
 -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는 경우 명시
 -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
(사용료 미만의 범위 내에서 감경)
- 「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」에서 위임한 사용·수익의 조건을 규정함(안 제9조)
- 출자·출연 또는 경비를 지원하거나 사용·수익허가 또는 관리를 위

탁한 프로 스포츠단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을 규정함(안 제10조)

-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·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(안 제11조)

- 법적근거

- 「스포츠산업진흥법」
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8. 1. 25.)

2.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17. 10. 23.

- 제 출 자 : 장성군수

- 제안이유

- 상무대 군인아파트(주민등록 3,000명)를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군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.

- 주요내용

공동주택 지원대상의 범위에 군인아파트를 추가 포함(안 제4조)
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8. 1. 25.)